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6
----------	-----

2023. 3. 24.(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육부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시범 및 중점학교 운영 정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환경교육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초록 학교’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환경학교’로 변경하여 환경교육을 보다 폭넓게 활성화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초록학교’ 를 ‘환경학교’ 로 변경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환경교육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초록학교’ 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환경학교’ 로 변경하여 환경교육을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활성화 하려는 것임.
-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이 2022년까지 종결된 상태고, 현행 환경교육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들의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을 지향하며 환경교육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환경교육의 일부 사업명이었던 ‘초록학교’ 를 환경교육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환경학교’ 로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됨.

〈충청북도교육청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연도/ 학교급	학교수(교)					합계
	유	초	중	고	특	
2018		20	6	2	2	30
2019		31	5	1	3	40
2020		34	7	3	5	49
2021	4	37	5	3	6	55
2022	8	32	3	1	5	49
합계	12	154	26	10	21	22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연구학교 운영 현황〉

□ 탄소중립 시범학교

- (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지원 강화
- (근거)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 21.4.13.)
- (대상)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공모 선정교)
- (지원 현황) 2021.~2023. 탄소중립 시범학교[특별교부금]

연번	지역	학교급	학교명	금액(천원)	비고
1	청주	중	솔밭중학교	10,000	2021. 초2, 중2, 고2 총 6교
2	제천	초	내토초등학교	10,000	
3	옥천	중	옥천여자중학교	10,000	
4	음성	초	수봉초등학교	10,000	
5	청주	고	봉명고등학교	10,000	
6	청주	고	청주여자고등학교	10,000	
소계				60,000	
1	충주	유	탄금유치원	10,000	2022. 유1, 초2, 중1, 고3, 특수2 총 9교
2	청주	초	용아초등학교	10,000	
3	보은	초	보은삼산초등학교	10,000	
4	단양	중	단양중학교	10,000	
5	청주	고	금천고등학교	10,000	
6	청주	고	봉명고등학교	10,000	
7	청주	고	청석고등학교	10,000	
8	충주	특수	충주성심학교	10,000	
9	제천	특수	청암학교	10,000	
소계				90,000	

1	제천	유	경희숲유치원	7,000	2023. 유4, 초4, 중1, 고3, 특수1 총 13교
2	청주	유	남성유치원	7,000	
3	옥천	유	삼양유치원	7,000	
4	청주	유	창신유치원	7,000	
5	괴산증평	초	목도초등학교	7,000	
6	진천	초	문백초등학교	7,000	
7	청주	초	원평초등학교	7,000	
8	청주	초	주중초등학교	7,000	
9	충주	중	충주미덕중학교	7,000	
10	청주	고	금천고등학교	7,000	
11	청주	고	봉명고등학교	7,000	
12	청주	고	청석고등학교	7,000	
13	충주	특수	충주성심학교	7,000	
소계				91,000	
합계				241,000	

탄소중립 실천학교

- (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공모 선정교)
- (지원 현황) 2023.~2021. 탄소중립 실천학교 지원 현황

연도	학교급						금액(천원)	비교
	유	초	중	고	특수	대안		
2023	11	20	5	3	1	-	340,000	40교
2022	8	32	3	1	5	-	245,000	49교
2021	4	37	5	3	6	-	250,000	55교

탄소저감 학교숲

- (목적) 학교 환경문화 조성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탄소저감 학교숲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공모 선정교)
- (지원 현황) 2023.~2021. 탄소저감 학교숲 지원 현황

연도	학교급						금액(천원)	비고
	유	초	중	고	특수	대안		
2023	1	23	14	8	3	1	680,000	50교
2022	0	22	16	11	2	-	850,000	51교
2021	0	27	17	11	2	-	800,000	57교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8조에 현행 ‘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지정·운영’을 ‘연구학교 및 환경학교 지정·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환경학교를 지정·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환경교육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주요내용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은 향후 본 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을 시범운영하는 학교가 교육부의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에 맞게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 참여·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선정과 지원 내용 및 방법, 성과평가 및 활용 등 세부 추진 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지정·운영)”을 “(연구학교 및 환경학교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초록학교”를 각각 “환경학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3. ~ 7. (생략)</p>	<p>제4조(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p>
<p>제8조(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라 한다) 및 <u>초록학교</u>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연구학교 및 <u>초록학교</u>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연구학교 및 <u>초록학교</u>는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p>	<p>제8조(연구학교 및 <u>환경학교</u> 지정·운영) ① ----- ----- ----- --- <u>환경학교</u>----- --.</p> <p>② ----- <u>환경학교</u> ----- -----.</p> <p>③ ----- <u>환경학교</u>----- ----- -----.</p>

관계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교육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3. 3. 1.] 제10조의2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